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3
----------	------

발의연월일 : 2018. 10. 29.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구자학 의원

1.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반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시 불출석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시 근거 규정 수정.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조, 제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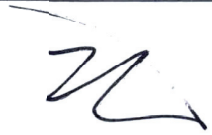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서 도 원	서도원	
구 자 학	구자학	